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2141

제출연월일 : 2024. 7. 2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조)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 제2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

게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7년 이 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3 조)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을 하향 조정하고, 같은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 등이 3년 내에 누범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형법의 누범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③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조(「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한다.

제3조(「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다. 제3조제1항 중 "3년 이상 15년 이하"를 "1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 칙

제8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8호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57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3조제2항 중 "제53조제4항"을 "제53조제5항"으로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1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	<u><삭 제></u>
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제5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
	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u>과한다.</u>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④</u> 제1항부터 <u>제3항</u> 까지의 규정	<u>⑤</u> <u>제4항</u>
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	
과 · 징수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제57조(벌칙)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	
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u>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u>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
	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u>다</u>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 처벌) ① 오염물질을 불법배출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 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③ (생략)

제8조(누범의 가중)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지 3년 내에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

정

아

개

처벌) ① -----

<u>10년 이하</u>-----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 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제7 조의 죄를 범한 자는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 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 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 다.

[별지 제1호서식]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53조 제3항(과태료)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53조 제3항(과태료)	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현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300 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8호)에 처하는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3조 제3항) 부과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되는 과태료 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법 개정 후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하는 경우로서 기술적으로 추계 불가

Ⅲ. 부대의견

O 본 일괄개정안 법률 3건 중 2개 법률(화학물질관리법, 환경범죄 단속법)은 형벌의 정도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별도의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Ⅳ. 작성자

1. 총괄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곽현아	노원택	김마루	김효정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곽현아	044-201-6396	kwakkwak@korea.kr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이신영	장재훈	양우근	김종률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재훈	044-201-7064	ecology9987@korea.kr